

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규약 및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규약	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반영
일괄신고서	① 결산에 따른 재무제표 갱신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② 연환산 표준편차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(3등급→2등급)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0년 6월 30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규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<p>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②~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1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법령·신탁계약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p> <p>2. 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p> <p>②~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를 변경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익자는 집합투자재산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가 변경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보상 금액: 변경시행일 전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 * 제2호의 대상 기간 일수 * 제39조 제3항 각호에 따른 보수율</p> <p>2. 대상 기간: 변경일로부터 6개월간. 단, 남은 신탁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의 기</p>

		<p>간으로 함.</p> <p>3. 지급방법: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</p> <p>⑤ 제4항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으로 인해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(법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)를 상대로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</p>
부칙	<신설>	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◆ **일괄신고서 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**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	투자위험등급 3등급(다소높은위험)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 <생략>	투자위험등급 2등급(높은위험) 투자비용, 투자실적추이,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
본문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<생략>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운용인력 운용현황 업데이트
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등급 중 3등급(다소높은위험) 연환산 표준편차 : 11.56%	제2부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등급 중 2등급(높은 위험) 연환산 표준편차 : 18.14%
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생략>	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기타비용 업데이트
	제3부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	제3부 업데이트
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생략> 라. 운용자산 규모 <생략>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업데이트 라.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